

# 시의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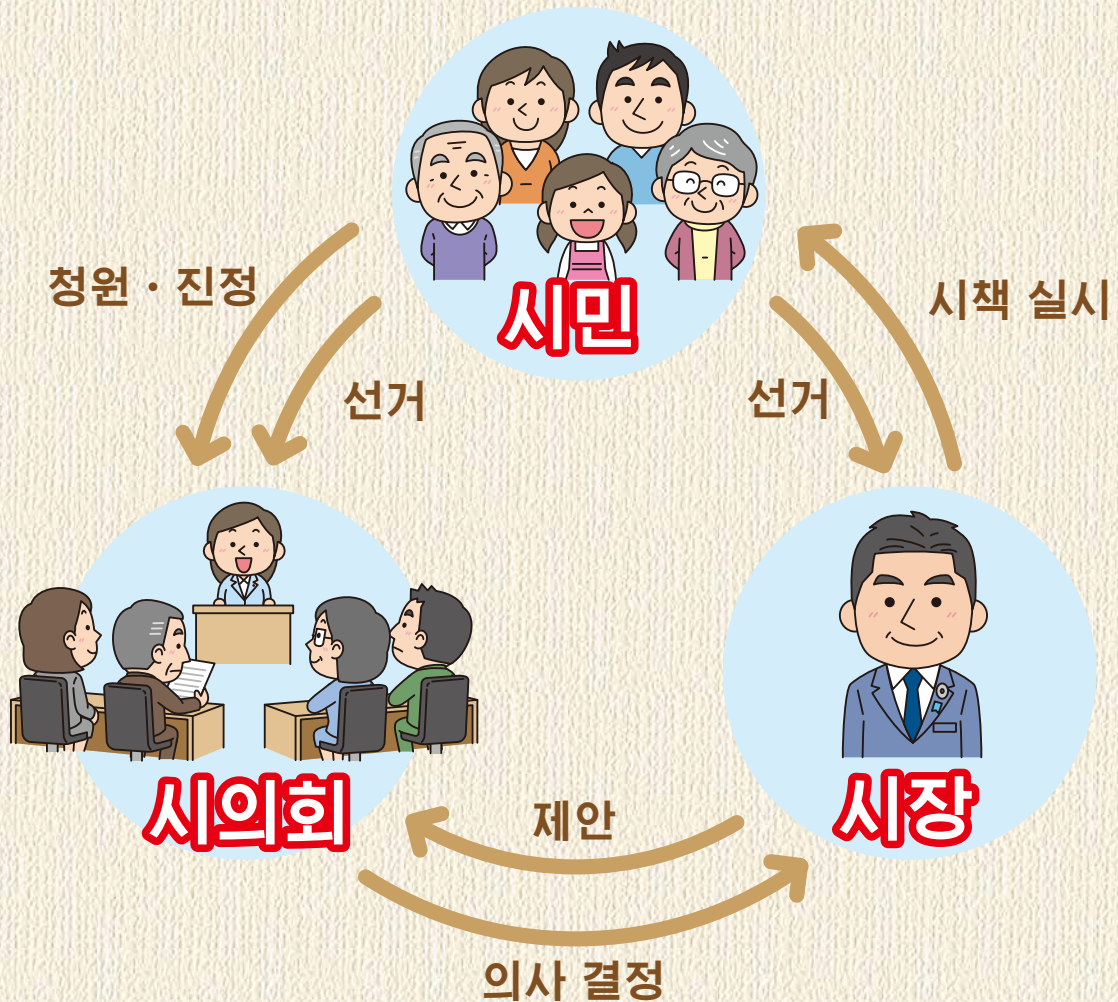
가와사키시의회

오요용



# 시의회와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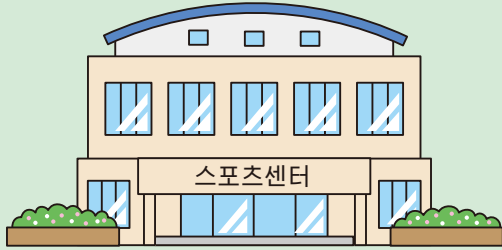
지방공공단체는 그 의사와 방침을 결정하는 의회(의결기관)와 의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행정을 실행하는 단체의 장(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독립·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와 협력을 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며 보다 좋은 시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스포츠센터 건설 계획에 대한 시민의 요청사항이 반영되기까지

시가 발표한 스포츠센터의  
건설 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요청사항

넓은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정비에 대한 요청사항을 시의회에 전달  
(청원·진정서 제출)



시의회에서 협의·시찰  
(청원·진정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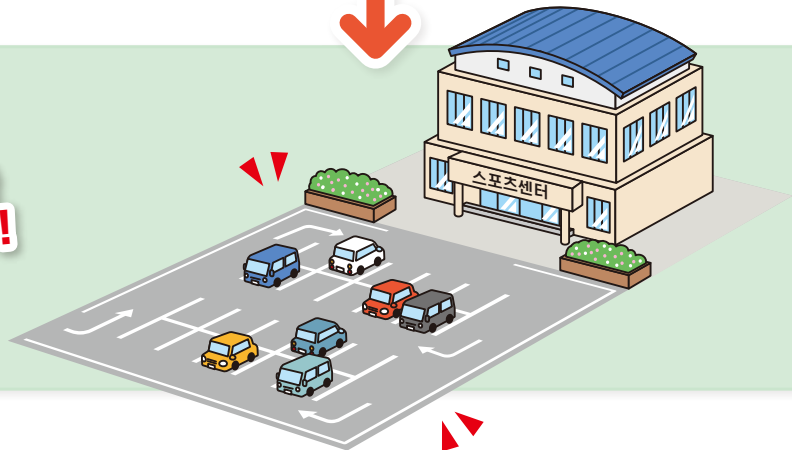
청원·진정서의 채택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가 사안을 진행



넓은 주차장이 있는  
스포츠센터가 완성!



# 시의회의 구성

## 의원

시의회는 시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시내에 주소를 가진 시민에게는 시의회 의원을 투표할 자격(선거권)이 있으며, 또 선거권을 가진 만 25세 이상이면 시의회 의원에 입후보 할 자격(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의회의 정수는 60명으로, 임기는 4년입니다.  
의원은 행정구별로 선출되며 각 구의 의원 수는 그 인구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



## 의장 · 부의장

시의회에는 의원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발된 의장과 부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은 시의회의 대표자이며 시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면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거나 시의회의 사무를 감독하고 처리합니다.  
부의장은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등에 의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 계파

시의회에서는 같은 주의 · 주장을 가진 의원이 모여 계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시의회의 운영 ·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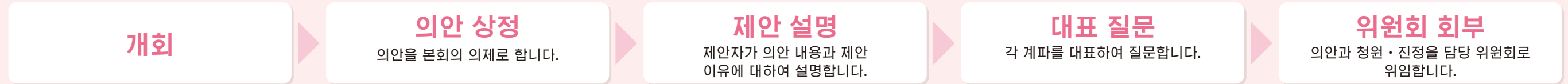
시의회에는 연 4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통상 2월, 6월, 9월, 12월)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 · 임시회 모두 시장이 소집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의장이 청구를 할 경우 및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청구를 할 경우, 시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우선 회기(일정 기간)가 정해지고,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에 본회의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안의 심의나 심사를 실시합니다. 시의회는 회기 중에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폐회 중이라도 위원회를 열어 계속 심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와사키시의회에서는 폐회 중에도 각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의회 활동 과정

### 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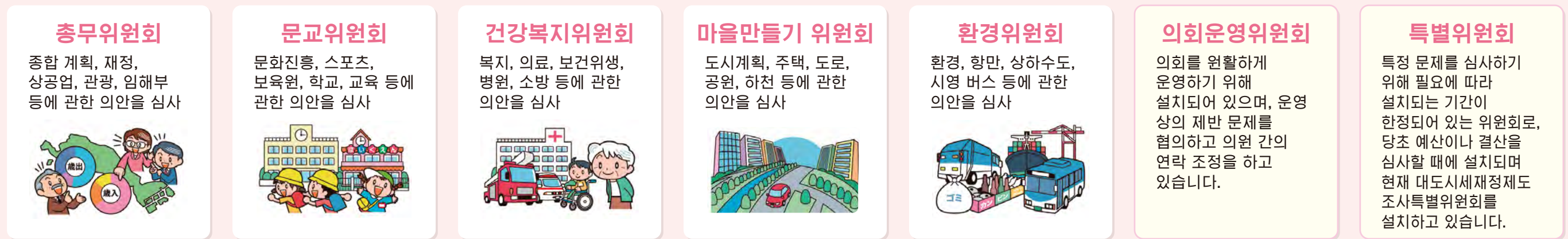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의안이나 시의회로서의 의사 표시 등의 가부는 최종적으로 모두 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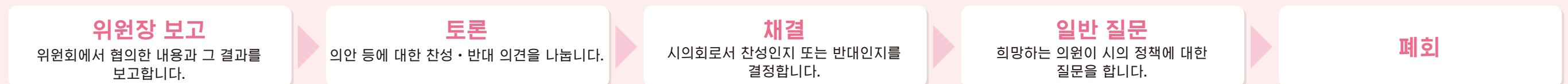
### 위원회(설명, 질의, 채택)

복잡다기한 의안을 본회의에서만 심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수 의원으로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5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안 심사 외에도 회부된 청원 · 진정 등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 본회의



# 시의회의 권한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률과 조례에 의해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된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조례 제정이나 개폐, 예산 결정, 결산의 인정, 일정액 이상의 계약 체결, 시의 중요한 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의 중요한 문제를 의결합니다.

## 선거권

시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관리위원 등을 선출합니다.

## 동의권

부시장, 교육장, 교육위원회위원, 감사위원, 인사위원회위원 등을 시장이 선임·임명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검사권·감사청구권

시의 사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서류 등을 통해 검사를 하거나 감사위원회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권

시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두나 증언, 기록 제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권

시의 공익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국가·현 등의 관계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불신임 의결권

의회와 시장이 대립하여 해결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판단을 시민에게 구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립권

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내부의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폭넓은 권한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시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의사설명원

제출한 의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의장석 좌우에 시장, 부시장, 교육장, 병원사업 관리자, 상하수도 사업관리자, 각 국장, 임해부 국제전략본부장, 회계관리자, 각 구청장, 위기관리감, 교육차장 및 각 행정위원 (위원장 및 대표감사위원)이 출석합니다.

# 우리들의 생각을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 직접 청구

시정 운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유권자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 조례 제정과 폐기, 의원 해직, 의회 해산, 시장·부시장 등 주요 공무원의 해직, 사무 감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원·진정

시정에 대한 요청사항은 문서로 직접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개 의원이 있는 것을 청원, 없는 것을 진정이라고 합니다. 청원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사되지만, 가와사키시의회에서는 진정도 청원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 시의회 활동에 대하여 알아 보려면

## 방청

본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습니다.

## TV 방영

신년 포부 등의 의견을 나누는 의장·부의장의 신춘대담,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계파의 대표가 견해 등을 나누는 좌담회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 의회 홍보지 “의회 가와사키”

시의회 활동 내용과 심의 결과 등을 공지하기 위해 홍보지 “의회 가와사키”를 연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 내의 주민자치회에서 배포 또는 포스팅해서 전해드리는 것 외에도 구청이나 역 등의 공공 시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회의록 검색 시스템

키워드를 입력하여 본회의나 위원회 등에서의 심의·심사 내용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구청이나 도서관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의록 검색 시스템

## 의회 중계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나 위원회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모습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나 녹화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각 구청의 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의회 중계 페이지

##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 트위터)

- 시의회 의원의 명부, 회의 일정이나 결과, 시의회 대차 내용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페이스북과 X(구 트위터)를 통해서도 시의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city.kawasaki.jp/council/>  
가와사키시의회 검색



시의회 홈페이지